

제 호

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

수령인	성 명	
	생년월일	
	주 소	
보상금액		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	
채 권 부 담 회 계 명		
채 권 취 급 기 관		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수령인은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 통지서를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사 업 시 행 자

인

수령인 지참물	1. 도장 2.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보상채권취급기관에서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 보상채권을 교부합니다.